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지시를 받아 일시적으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발전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하는 등 법령 정비를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 업종 확대(별표 1)

-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
-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

나. 급전지시를 받은 발전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 면제 (별표 11)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시설의 정지·재가동·가동개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급

- 전지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까지 면제
- 다.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대상에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술인력
추가(제4조의2)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시 필요한 기술인력을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사항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

제6조제1항 중 “1년 의”를 “1년의”로 한다.

제23조의2 중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을 “법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리, 갯”을 “수리, 갯”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조업정지”를 “따른 조업정지”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접수”를 “접수 및 검토”로 한다.

1.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 검토 및 배출영향분석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

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서의 검토 지원

별표 1 제10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가목 중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를 “기타”로 하고, 같은 란(중전의 제13호) 제13호(중전의 제13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가목 중 “(1711)”을 “(17101)”로 하며, 같은 란 제13호(중전의 제13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나목 중 “(17121)”을 “(17102)”로 하고, 같은 란 제13호(중전의 제13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다목 중 “(17122)”를 “(17103)”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13호(중전의 제13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13호(중전의 제13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마목 중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을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05)”으로 하며, 같은 란 제13호(중전의 제13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바목 중 “(17125)”를 “(17106)”으로 한다.

라. 골판지 원지 제조업(17104)

별표 1 제13호(중전의 제13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사목 중 “(17129)”를 “(17109)”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제14호 중 “(179)”를 “(179)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14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가목부터 제14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바목 중 “(26295)”를 “(26294)”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 통합관리 대상 업종란

제21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신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17901)

나.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17902)

다.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17903)

라.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09)

23.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112)	2028년 1월 1일
24.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104)	
25. 기타 식품 제조업(108)	
26.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301)	2029년 1월 1일
27.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28.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231) 중 판유리 제조업(23111)	
29. 고무제품 제조업(221)	

별표 2 제1호나목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에 따라”를 “설치 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연료 및 원료의 추가나 변경, 시설의 교체 등으로 인해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22)부터 2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4)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교체”를 “교체 또는 폐쇄”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새롭게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해당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타.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가목 및 나목의 인력을 합하여 상근인력 총 5명 이상을 보유하되, 가목의 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구분	내용
가. 고급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

	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일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통합허가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통합허가 관련 분야“란 대기, 수질, 폐기물, 상하수도,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연구, 화학공학 및 화학 등 통합허가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2.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나목의 일반인력에는 통합허가 관련 분야 중 대기 분야의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2명(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목의 고급인력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4.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포함된 사람은 다른 통합허가대행업 또는 다른 사업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중 환경부문으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포함될 수 없다.

5. 나목의 일반인력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가목 중 “별표 제3호”를 “별표1 제3호”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1)의 감면 내용(감면 비율)란 중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의 감면 내용(감면 비율)란 중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3)의 감면 내용(감면 비율)란 중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감면 내용(감면 비율)란 중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시설의 정지·재가동·가동개시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면제(급전지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	--

별표 12 제1호나목2)다) 중 “측정기기의 부착만”을 “측정기기에만 부착을”로 하고, 같은 목 3)나)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며, 같은 목 3) 다)(1) 및 (2) 외의 부분 중 “별표 8”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라) 및 같은 호 나목2)가)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

조제2항”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 중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22조제1항·제2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제22조제4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3의2 제1호 중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을 “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3의2 제2호가목 중 “받기위하여”를 “받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u>기술인력</u> <u><신설></u>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u>통합허가대행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u>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연간 <u>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인력</u>
제6조(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u>1년</u>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개선기간) ① ----- ----- ----- ----- ----- <u>1년의</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u>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u>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u>법 제23조제2항</u> -----

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
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
의2와 같다.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

<신 설>

1. ~ 8.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
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
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
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
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
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개선명령

2. (생략)

-----.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

-----.

1.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 검토 및
배출영향분석 수행을 위한 조
사·연구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② -----

-----.

1. -----

----- 수리, 같-----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조업정지</u> 또는 <u>사용중지</u> 명령 4. ~ 10. (생략)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u>접수</u> 12. ~ 14. (생략)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3. ----- ----- <u>따른</u> <u>조업정지</u> ----- 4. ~ 10. (현행과 같음) 11. ----- ----- ----- <u>접수 및 검토</u> 12. ~ 14.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u>의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서의 검토 지원</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6717